

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4. 1. 24.>

수산동물의 포획·채취방법(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)

지역별	포획·채취방법
1. 부산광역시·인천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기도·충청남도·전북특별자치도·전라남도 및 경상남도	나잠(裸潛)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 가.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지정을 받은 마을어장 형망선 나.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승인을 받은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(전북·소라·키조개 및 고등 외의 패류를 포획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)
2. 강원특별자치도·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	나잠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 가.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지정을 받은 마을어장 형망선(전북·소라·키조개 및 고등 외의 패류를 포획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) 또는 자원관리채취선 나.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승인을 받은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.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전북·소라·키조개 및 고등 외의 패류를 포획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.